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5년 하반기 개정판)

Part 4.
영업비밀 보호 법규(부경법) 해설
관련 부서: 전사(全社)

Copyright © 2025 Hanwha Systems Co., Ltd. All rights reserved.

사전 안내 사항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한화시스템(주)의 모든 임직원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연관된 공정거래 법규들을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와 연관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의 내용을 총 망라하여 정리한 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교과서이자 지침서입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분들은 업무 수행 시 사전에 본 자율준수 편람을 활용하시어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 법규 저촉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편람을 참고하시되, 상세 업무 추진은 반드시 회사 공정거래 담당 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NDEX

Part. I. 영업비밀보호 법규(부경법) 해설

01 부정경쟁 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Part. II .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01 체크리스트 안내

02 부정경쟁 방지법 체크리스트

Part. I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안내

01 부정경쟁 방지법 및 시행령



I. 부정경쟁 방지법 해설

1. 부정경쟁 방지법 해설

1.1 부경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의미

■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

- 의미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 영업비밀 침해 행위

1.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2.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영업비밀이 위 4.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위 4.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2. 영업비밀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비교

부경법상 영업비밀 정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함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정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항)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① 비밀관리성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뜻함

② 경제적 유용성

-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 요구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도급법 제18조)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3. 영업비밀보호 관련 이해관계자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당사 이해관계자는 정부, 주주, 고객, 협력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각 유형별 이해관계자 및 당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사항, 당사의 법 위반으로 이해관계자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예시	준수 필요 사항	발생 가능 피해
정부	특허청 및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영업비밀 침해 금지·중지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영업비밀 보유자 신용회복 법 위반 행위의 시정 등	-
주주	당사 주주		• 대외 이미지 하락, 주가 하락 등 따른 금전적 피해
고객	방사청, 국과연 및 전체 매출 거래처		• 기술유출, 유용 등 따른 금전적·사업적·업무적 피해
협력사	전체 매입거래처		• 기술유출, 유용 등 따른 금전적·사업적·업무적 피해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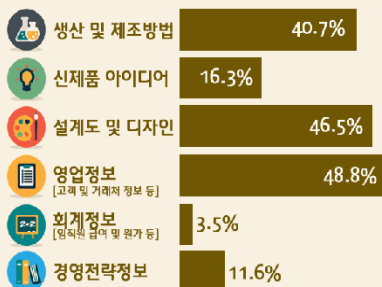
1.1.4. 영업비밀 침해 유형

- 영업비밀은 임직원 이직과 거래 관계에서 주로 유출
- 유출 시 매출액 감소나 대외 이미지 하락과 같은 피해 발생

국내외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

01.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 [출처 : 2016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영업비밀 침해실태조사,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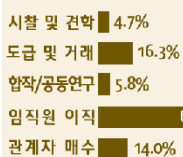
영업비밀 유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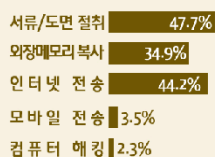
영업비밀 유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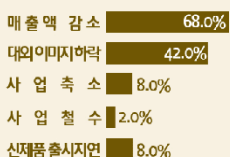
영업비밀 유출 경로



영업비밀 유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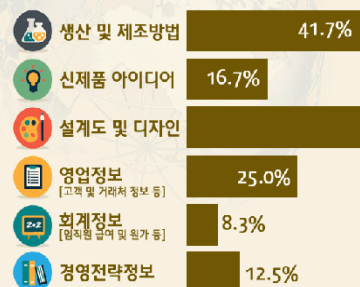


영업비밀 유출 피해



02.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 [출처 : 2016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영업비밀 침해실태조사,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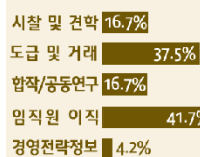
영업비밀 유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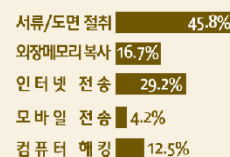
영업비밀 유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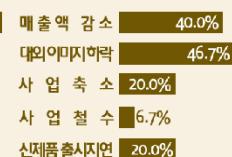
영업비밀 유출 경로



영업비밀 유출 방법



영업비밀 유출 피해



<그림 출처: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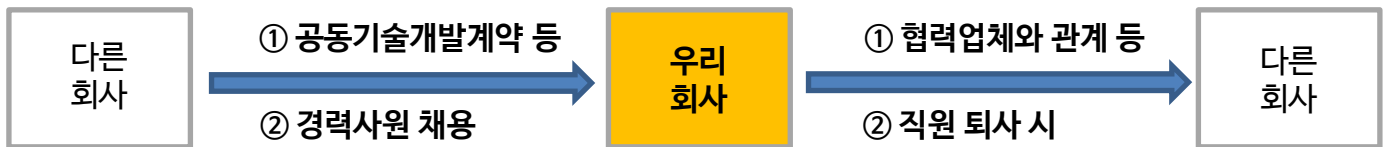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4. 영업비밀 침해 유형

[영업비밀 침해·유출 도식]

[정보 유입]

[정보 유출]



- ↘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타사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 ↘ 권한 없는 타사 임직원 또는 비공식적 경로로 정보를 취득, 사용한 경우
- ↘ 경쟁사의 임직원이었던 자와 고문/자문/컨설팅 계약을 맺어 타사 영업비밀 정보 수집하는 경우
- ↘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 ↘ 협력사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 ↗ 내부 임직원이 영업비밀 해당 자료를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영업비밀 유출 발생하는 경우
- ↗ 타사와 공동연구개발 진행 과정에서 비밀유지약정 등을 체결하지 않고 회사 기술정보 등을 타사에 제공하는 경우
- ↗ 퇴사자가 재직 중 취득한 경영정보 등을 사용하여 퇴사 후 관련 영업 등을 하는 경우
- ↗ 영업비밀 해당하는 회사의 기술정보에 회사와 무관한 제3자 접근이 가능하여 영업비밀 유출 발생하는 경우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5. 영업비밀 관련 법령 비교

구분	하도급법(공정위)/상생협력법(중기부)	부정경쟁 방지법(특허청)
목적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	-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
보호 대상	- 기술자료(=기술정보) * 경영상의 정보는 별도 규정	- 타인의 상호, 상표, 아이디어 - 영업비밀(기술정보+경영정보)
요건	- 비밀관리성 - 경제적유용성	- 비밀관리성 - 경제적유용성 - 비공지성
금지 행위	- 절차: 기술자료요구서 미발급 - 행위: 기술자료 유출, 유용	- 부정경쟁행위 : 타인의 상호, 아이디어등 침해 - 영업비밀 침해행위 : 부정취득, 사용, 공개
처벌	- 절차위반: 과징금 - 유용행위: 고발	10년 ↓ 징역 또는 5억원 ↓ 벌금
	양벌규정	양벌규정
민사	기술탈취/유용 징벌적손해배상(5배)	기술침해 징벌적손해배상(5배)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산업기술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64 판결]

• 사건 개요

- ✓ A社は OLED관련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TV, 스마트폰 액정화면 등에 널리 이용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엔 포함되지 않는 기술 'X'를 보유하고 있었음
- ✓ A社에 근무하던 甲은 퇴사를 결심하면서 기술 'X'의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반출 이후 甲은 B社에 입사하였고, B社は 기술 'X'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 ✓ A社は 甲을 업무상배임 및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

• 법원의 판단

- ✓ 甲이 유출한 기술 'X'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A社の 보안 관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ii)A社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 가능
- ✓ 이러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무단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

- 결과: 甲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천만원 선고

Check Point!!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정보 또는 기술 자료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여 외부 유출 시 처벌 가능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고액의 대가 등을 약속받고 기술을 유출하여 처벌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노2568 판결]

• 사건 개요

- ✓ A社は 첨단 이동통신 중계기 기술 ‘K’를 보유한 업체로 ‘K’기술 자료에 대해 프로젝트 팀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였으나 서류에 영업비밀이라는 표기는 하지 않았음
- ✓ 甲은 A社の 영업총괄상무이자 ‘K’기술 자료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K’기술 프로젝트 팀장으로 기술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는데도 경쟁사인 B社에 ‘K’기술자료를 유출하여 상당한 대가를 제공 받았음

• 법원의 판단

- ✓ A社は ‘K’기술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
- ✓ 그러므로 유출된 ‘K’ 자료에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고 하여도, A社 임직원이면 누구나 해당 자료 모두 비밀로 인식할 수 있는 실질을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함
- ✓ 甲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상당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

- 결과: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3년) 및 약 1억 3천만 원 추징

Check Point!!

-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표시하지 않은 정보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자료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
-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재직 중 저장·보관한 기술자료를 이직하여 사용하여 처벌받은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1.9.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 사건 개요

- ✓ A社は 연구개발을 통해 식품 제조 기술인 ‘Y’를 개발하고 이 기술을 활용한 ‘H’제품을 제조·판매하였으며 관련 기술 자료는 비밀로 유지·관리하였음
- ✓ A社에서 기술 개발업무를 총괄했던 甲은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에 ‘Y’기술 관련 자료들을 정당한 절차 없이 저장·보관하고 있었는데, 해당 파일 보유사실을 A社에 고지하지 않고 퇴사
- ✓ 그 후 甲은 A社の 경쟁사인 B社에 입사하여 유사 제품 연구개발에 참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Y’관련 자료를 제목만 수정하여 B社에 제출하고, B社は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판매

• 법원의 판단

- ✓ 식품에 있어 제조 기술은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이고, A社가 ‘Y’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며,
- ✓ ‘Y’기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A社가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였으므로 ‘Y’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
- ✓ 또한 B社가 절취·기망·협박이 아니더라도 ‘Y’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기술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Y’기술을 이용하여 신규 제품 개발, 생산, 판매하는 등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이상,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

• 결과

- 甲,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B社,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약 8억 7천만원 손해배상책임

Check Point!!

- (i)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중요 정보이고, (ii)정보취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었으며, (iii)비밀로 유지·관리 되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
- 재직 시 습득한 기술자료를 타 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기술유출에 해당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재직 중 본인이 연구한 자료를 퇴직 후 사용하여 처벌 받은 사례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 사건 개요

- ✓ 甲은 LED 제품 생산 업체인 A社の 부사장 겸 기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제품 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 및 시장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
- ✓ 甲은 B社로부터 A社 지급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약속 받고, 본인이 연구한 A社 연구자료 ‘X’를 그대로 가지고 퇴사한 후, B社에 입사
- ✓ 그 후 甲은 연구 자료 ‘X’를 인쇄하여 B社 직원들에게 교부
- ✓ 위와 별개로 乙은 A社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며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급여와 근무 조건이 좋은 B社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A社 기술자료 ‘Y’를 절취하여 B社에 제공한 후, B社로 이직하여 영업이사로 재직함

• 법원의 판단

- ✓ 연구 자료 ‘X’와 기술 자료 ‘Y’가 (i)영업활동에 바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지 않았고, (ii)B社에게 아무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iii)누구나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 ✓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고 해당 정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해당 자료는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과:

-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甲, 乙과 B社は A社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

Check Point!!

- 본인이 연구한 자료도 유출시 처벌 가능
-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누구나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자료라 하여도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자료를 재작성하여 유출한 경우에 대한 처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955 판결]

• 사건 개요

- ✓ A社は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로 산업기술인 ‘X’설비를 제작하고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였으며, 甲과 乙은 A社에서 각각 수석연구원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 丙은 전직 A社の 연구원으로 현재는 중국에 광학 부품 제조 및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社를 설립하고, B社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甲, 乙에게 ‘X’설비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
- ✓ 이에 甲은 ‘X’설비 관련 파일을 전송 후 다른 파일로 재작성하여 丙에게 공유하였으며, 乙은 ‘X’설비 관련 도면을 업무수첩에 옮겨 적은 뒤 캐드 파일로 재작성하여 丙에게 전달함

• 법원의 판단

- ✓ 甲, 乙은 기술력이 미약한 B社에 ‘X’설비 관련 공지 기술을 가르쳐주어 장비를 개선하고 이를 A社에 납품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i)甲과 乙이 해당 장비 뿐 아니라 B社 업무의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점, (ii)甲과 乙이 주기적으로 B社の 회의에 참석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였고 (iii)회의 참석 관련 사항을 A社에 보고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과 乙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社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됨
- ✓ 따라서, 甲과 乙은 A社の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 자료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社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됨

- 결과: 甲, 乙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각 징역 2년

Check Point!!

- 원본이 아닌 복제, 편집한 자료를 유출하여도 처벌 가능함
-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음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처벌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2008434 판결]

• 사건 개요

- ✓ A社は 전자부품 및 장비물 개발 및 제조회사로, 甲은 A社の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장비물을 제조하는 기술인 'X'를 개발하고 관련제품 생산을 총괄하다가 퇴사함
- ✓ 乙은 A社の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 'X'의 개발과 관련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
- ✓ 하다 퇴사함
- ✓ 그 후 甲, 乙은 반도체 부품 생산,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한 B社를 함께 설립한 후 A社에서 재직하며 지득한 'X' 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함

• 법원의 판단

- ✓ 'X' 기술은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 공정 정보 및 기술적 노하우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A社가 상당 정도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들여 개발한 영업비밀에 해당함
- ✓ 甲, 乙이 별도의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더라도, A社에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영업비밀을 활용하였다면 이는 침해에 해당함

• 결과

- 甲, 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甲, 乙, B社は A社에 2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

Check Point!!

-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더라도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정보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유출 또는 활용 시 처벌 받을 수 있음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기술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벌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1958 판결 외]

• 사건 개요

- ✓ 甲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 기계 제조업체인 A社の 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社를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등이 포함된 기술 자료 'X'를 허가 없이 반출함

• 법원의 판단

- ✓ 甲이 반출한 기술 자료 'X'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비밀관리성 불인정), A社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
- ✓ 그러므로 파일 'X' 활용여부와 상관없이 甲은 A社를 퇴사하면서 임의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X'를 가지고 나온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결과: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Check Point!!

-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라고 하더라도 반출이 가능한 것은 아님
- 반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음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기술 자료를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 폐기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사건 개요

- ✓ 甲은 A社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영업비밀보호서약을 하고, 재택근무를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A社의 영업비밀 자료 'X'를 반출하여 개인컴퓨터에 보관하였음
- ✓ 이후 甲은 A社를 퇴사하면서 '본인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한 문서, 도면, 파일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료 'X'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음
- ✓ 그 후 甲은 B社에 입사하여 자신의 업무 컴퓨터에 자료 'X'를 옮겨 놓았음

• 법원의 판단

-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 ✓ 甲이 재택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파일들을 반출한 것이더라도 퇴사시에는 'X'를 A社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

- **결과: 대법원, 피고인들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유죄 취지 파기 환송**

Check Point!!

- 기술을 유출하여 활용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활용할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퇴사 시 이전 회사의 정보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 좋음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개인 메일 계정으로 기술 자료를 반출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고단4851 판결]

• 사건 개요

- ✓ A社,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내용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H'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
- ✓ 甲은 A社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자로 'H' 주요기술 자료들을 A社의 승인을 받지 않고 '논문준비'라는 제목으로 압축하여 자신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
- ✓ 甲은 A社 퇴사 후 동종유사 업종인 B社에 입사한 뒤 B社 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H' 주요 기술 자료들은 사용하지는 않음

• 법원의 판단

- ✓ 甲이 유출한 'H' 주요기술 자료를 A社 이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메일 계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전송한 행위는 산업기술유출에 해당

• 결과: 甲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Check Point!!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 되는 기술 자료를 이메일 전송,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는 등의 행위도 기술유출 행위에 해당
- 기술유출은 제3자의 해당 기술 사용여부와 상관 없음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경쟁업체에서 인터넷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파괴하여 처벌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 사건 개요

- ✓ A社は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업의 선두주자로 오랜 기간에 걸친 숙박정보 수집·보완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 ✓ 동종 경쟁업체인 B社の 연구자들은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여 A社の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무단 복제·가공하고 사용하여 A社は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음

• 법원의 판단

- ✓ A社の 제휴 숙박업소 정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인 자신들의 성과에 해당하며, B社は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社の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 결과: B社は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10억 손해배상

Check Point!!

- 타인의 기술이나 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
-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지침 준수 필요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듀폰' 대 '코오롱' 소송 ('11.~'15.)]

• 사건 개요

- ✓ 코오롱이 전직 듀폰 직원을 컨설턴트로 채용하여 듀폰 영업비밀(아라미드 소재)을 부정 취득·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해당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듀폰에 반납했다고 한 자료가 해당 직원 컴퓨터에 있었으며, 이를 코오롱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증거도 발견됨
- ✓ 미 법원은 코오롱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여 약 9억 달러의 손해배상 및 전 세계에서 20년간 관련 제품 생산·판매 금지를 명하였고, 코오롱이 배상금 3억 달러 지급 조건으로 합의
- ✓ 코오롱은 별도로 검찰에 벌금 8,500만 달러 납부
- ✓ 결과적으로, 코오롱의 5년 간 아라미드 수출액은 30억원에 불과하나 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4,000억원 이상을 지출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신일철주금' 대 '포스코' 소송 ('12.~'15)]

- 신일철주금이 포스코가 자사 퇴직 사원을 고문으로 채용해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을 빼돌렸다고 일본 및 미국 법원에 1조원 규모의 소를 제기함
- 포스코는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 합의금 명목으로 신일철주금에 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분쟁 종결
- ☞ 특허로 공개된 기술이어도 명세서에 공개되지 않은 세부적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분쟁('19.~'21)]

- 자동차용 2차전지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던 LG화학 직원들이 2년 동안 76명 이직,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며 ITC(미 국제무역위원회) 등에 제소.
- 조사 시, SK 내부에 “각자 PC, 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바랍니다. PC 검열 및 압류 들어 올 수 있으니… 본 메일도 조치 후 삭제 바랍니다.”는 이메일이 존재하였음 확인.
- 양사 ITC 최종 결정에 따라 아래 조건으로 최종 합의
 - ▲ 국내외 모든 분쟁의 상호 취하
 - ▲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책임면제와 영구적인 라이선스
 - ▲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쟁송합의
 - ▲ 이에 대한 대가로 LG에너지솔루션에게 일시금 1조원과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지급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주)포스코 특허기술 도용 장비 수출 적발 사례(2023.05.31.)

- 사건 개요
 - ✓ 사건 주범 A씨, (주)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따로 설립. 이후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하여 (주)포스코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를 4대 제작한 뒤 수출
 - ✓ 이후 B씨가 'ㄴ'사에서 퇴사하여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주)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하여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 △△국으로 수출하려다 인천세관에 의해 적발
- 범행 적발 과정
 - ✓ 조사 결과, A씨는 '20년 수출(→○○국) 당시에는 물품명을 '에어나이프 시스템'이라고 세관에 수출 신고하였으나, 특허권 침해 문제 발생이 예상되자 '21년 수출(→○○국) 시 '코팅장비'로 물품명을 위장하여 신고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임
 - ✓ '22년 11월 수출(→△△국)하려던 에어나이프가 세관 검사에 지정되자, 세관의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저장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
 - ✓ 인천세관 수사팀은 혐의 업체 본사,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디지털 포렌식 통해 혐의자들의 개인용컴퓨터(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도면 등 핵심 증거를 확보
- 시사점
 - ✓ 퇴사 이후 기존 회사 영업비밀, 특허권 등 보호대상 기술의 사용은 기술유출 범죄에 해당
 - ✓ 국정원, 관세청, 검/경 등은 이러한 기술유출 행위에 대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 기술을 퇴사 전/후를 막론하고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유출·유통할 경우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
 - 본 건의 경우 검경이 아닌 국정원 정보 토대로 관세청 수사부서가 기술유출을 적발
 - 검경 수사망 외 타 기관 조사, 수사 등을 통해서도 기술유출은 얼마든지 적발 가능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6. 영업비밀 관련 사례

국가핵심기술(반도체 공장 설계자료)을 해외로 빼돌려 무단사용한 사례('23.06.12.)

○ 사건 개요

- ✓ ㄱ○○은 A회사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한 후, B회사에서 10년간 부사장 등으로 근무한 자타공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
- ✓ ㄱ○○은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얻은 반도체 제조 분야 전문성 및 권위를 이용하여 중국 및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 중국 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설립
 - 중국 청두(成都)시 자본(약 4,600억원)으로 중국 업체 乙회사를 설립하고, 대만 C회사의 자본(약 8조원 투자 약정)으로 싱가포르 업체 甲회사 설립한 후, A회사와 B회사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
 - A회사 중국 시안(西安)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거리에 위 공장을 본따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A회사의 반도체 기술을 부정 취득 무단 사용
- ✓ ㄱ○○은 반도체 공장 설계 과정에서 甲회사 임직원들에 A회사의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甲회사 임직원들(공범들)은 위 지시 따라 A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부정 취득 후 무단사용함으로써 본건 범행에 적극 가담

○ 범행 적발 과정 및 검찰 수사 결과

- ✓ '19. 8. 대검 첩보(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 접수
 - ※ 피의자 ㄱ○○ 등 장기간 중국 체류로 인해 수사중지
- ✓ '23. 2.~4. 피의자 ㄱ○○입국, 피의자들 휴대폰 등 압수, 관련자들 조사
- ✓ '23. 6. 12. 피의자 ㄱ○○구속 기소/ 피의자 ㄴ○○등 공범 6명 불구속 기소

○ 시사점

- ✓ **마찬가지로, 전 회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술유출에 해당하여 처벌 받음**
- ✓ **거대한 투자나 이득의 제공에는 반드시 그에 준하는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
- ✓ **기술유출 후 해외로 도피한다 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음**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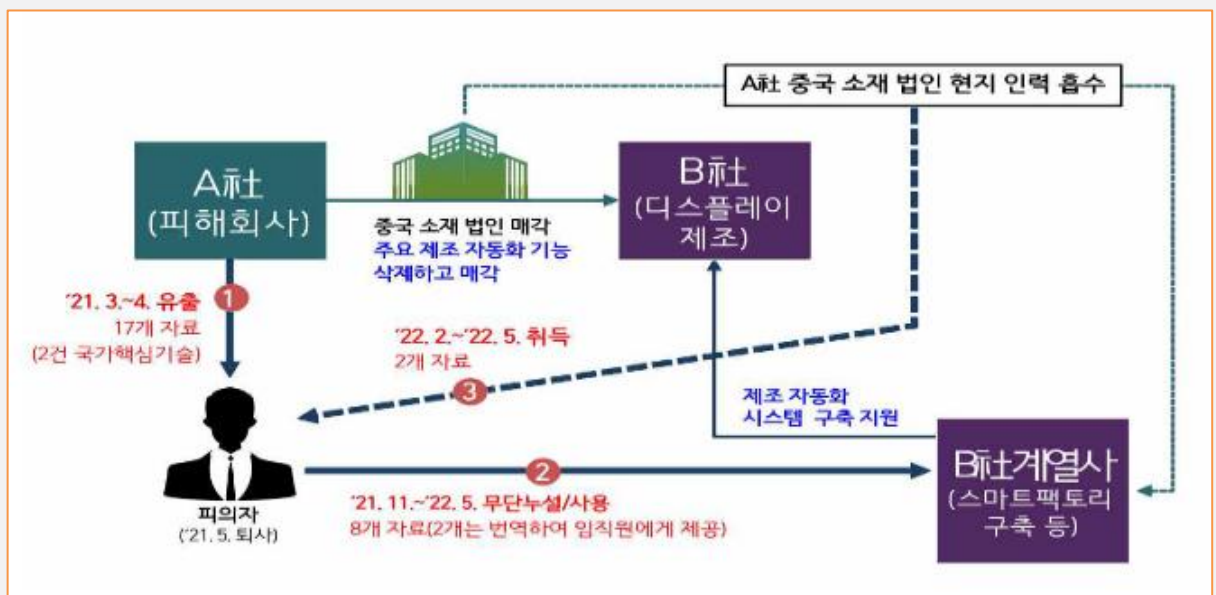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4. 영업비밀 관련 사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중국에 누설한 전 연구원 구속기소('24.11.21.)

○ 사건 개요

- ✓ 국내 디스플레이제조사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甲은 '21. 3.~4.(이직 직전) A社の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2개는 국가핵심기술)를 무단 사진 촬영 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B社の 계열사로 이직한 뒤 '21. 11.~'22. 5. 위 유출 자료 중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 자료로 만들어 8회에 걸쳐 B社の 계열사 임직원에게 전송하였음



○ 수사 결과

- ✓ 전직 연구원 甲 산업 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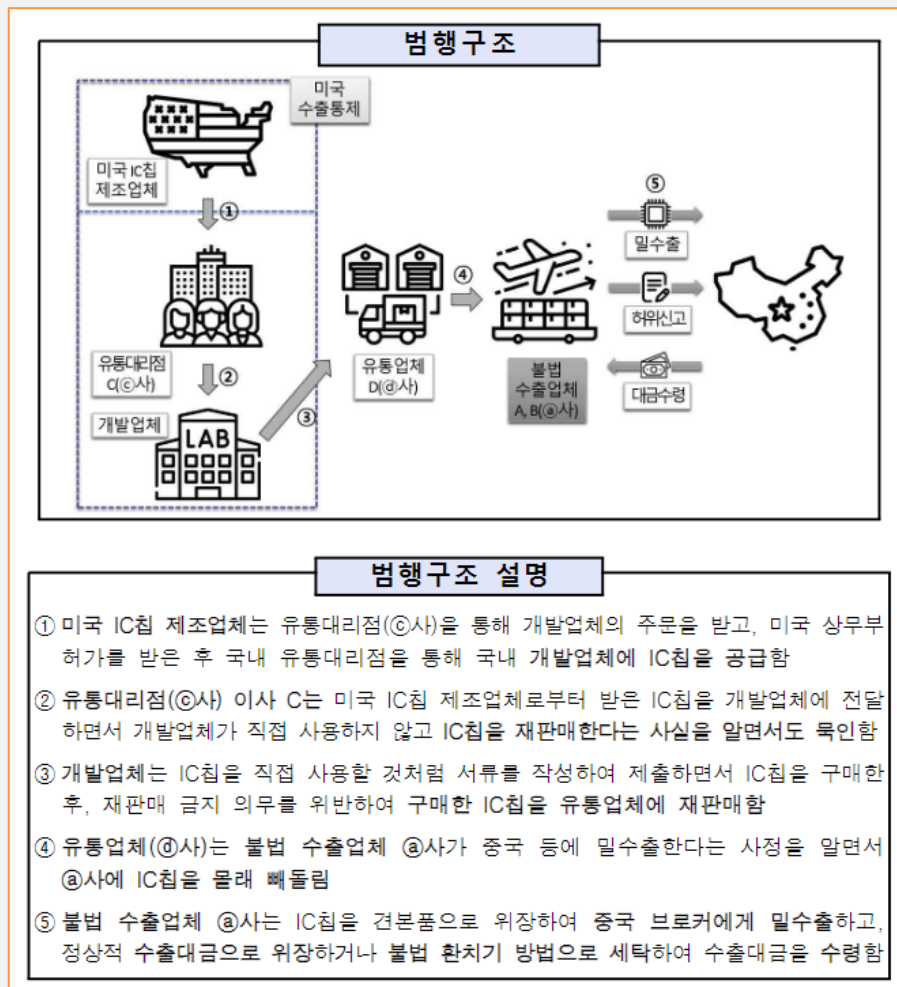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4. 영업비밀 관련 사례

중국에 전략물자 IC칩 밀수출한 수출업자 등 4명 구속기소('24.11.21.)

○ 사건 개요

- ✓ 수출업체 대표 甲은 군사용 레이더 장비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IC칩을 미국에서 수입한 다음 이를 타 유통대리점 업체 대표 등과 공모하여 이를 중국에 밀수출 하였음



○ 수사 결과

- ✓ 밀수출한 업체 대표 등 2명, 이를 도운 유통대리점 이사 및 유통업체 대표 등 4명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7. 영업비밀 관련 FAQ

Q1

- 법규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는 어떠한 행위들이 있는지?

A1

-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함
- 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나. 부정취득행위 개입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 or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부정 취득행위의 개입을 알면서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 라.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 마. ‘라’의 영업비밀임을 알면서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 취득 후 ‘라’의 영업비밀임을 알면서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 공개하는 행위
- ※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

Q2

-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A2

- ✓ 비밀등급 분류·표시: 대상 정보 비밀로 분류, 정보 자체에 비밀표시, 전자적인파일의 경우 파일명에 비밀등급이나 비밀문서임을 표시한 경우 등
- ✓ 접근대상자 한정: 대상 정보 접근·사용 가능한 사람을 한정하였는지 등
- ✓ 접근대상자 비밀유지의무 부과: 정보 접근 가능자 및 그 사용자에게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도록 고지 또는 서약·약정을 체결하였는지 등
- ✓ 접근방법 제한: 정보를 시건장치 또는 출입 통제된 장소에 보관, 전자파일의 암호 설정 또는 보안 시스템 보관 여부 등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7. 영업비밀 관련 FAQ

Q3

- 회사가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3

- ✓ 통상적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는 “대외비”나 “Confidential” 표시를 하거나, 전자파일의 경우 암호를 설정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들에게만 암호를 공유하거나, 회사 서버에 저장된 전자파일에 접근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여 권한이 있는 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 비밀관리 방식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음
- ✓ 연구자 입장에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이 취급하는 자료를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보안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Q4

- 회사 종업원으로 재직 시 중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나인데, 퇴직 후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사에 제공하면 안되는지?

A4

- ✓ 취업규칙, 직무발명 규정 등 사규에 의하여 종업원이 개발하거나 만든 정보·자료 등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퇴사 후 (본인이 개발한) 회사 소유의 기술 등을 회사의 동의 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사에 제공하면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됨
- ✓ 임직원이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성하거나 취득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활용, 처분, 기타 관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7. 영업비밀 관련 FAQ

Q5

- 회사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기술 등’을 퇴직 후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A5

- ✓ 직장에서 취득한 지식과 기술 등이 그 회사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무 중 일반적으로 습득 가능한 기술 등을 퇴직 후 사용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 이와 관련하여 영미법상 확립된 판례는 종업원이 일반기능·지식·훈련·경험(General skill, knowledge, training, and experience)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비록 고용기간 중 사용자의 자원을 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자기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영업비밀과 종업원의 일반기능·지식·훈련·경험과 구별하는 목적은 영업비밀보호와 종업원 이동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 서술하고 있음

Q6

- 퇴직 시 비밀보호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닌지?

A6

- ✓ 회사와 종업원 간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은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퇴직 후 상당 기간 동안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음
- ✓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1.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1.1.7. 영업비밀 관련 FAQ

Q7

- 외부로부터 입수한 타사의 정보를 회사에 보고해야 하는지?

A7

- ✓ 타사 정보를 입수한 경우, 즉시 그 입수의 경위를 소속부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입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고가 필요
- ✓ 그리고 타사 정보를 사용하거나 동료들에게 공유할 때에는, 타사로부터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는지, 타사와 공동연구개발계약이나 비밀유지계약 등이 적절히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이 필요
- ✓ 만약 이러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속부서 상급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Q8

-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에 의한 정보 취득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인지?

A8

- ✓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특허와 달리 독점배타적 권리를 허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라, 타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부정한 수단으로 탈취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규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존재함
- ✓ 따라서, 정당한 경로로 시중 판매 제품을 구입하여 분해하고 그 생산과정을 분석·연구하는 이른바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제조방법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 ✓ 그러나, 순수 역설계 행위 이외에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가 계약을 통해 역설계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역설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

II.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안내
2. 부정경쟁 방지법 체크리스트
 - 2.1. 영업비밀 보호 분야



1. 체크리스트 안내

- 본 장의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발생 가능한 법규 위반 Risk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장의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시어 본인의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사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의 자율점검을 위한 기본적인 Check - Tool 이며 그 결과가 곧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법무부서에 문의하시어 최종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받아 처리 바랍니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신 후 해당 체크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이슈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담당자(jangsw@Hanwha.com) 앞으로 체크리스트 체크 결과 및 검토 요청 사항, 간략한 사실관계, 질의 사항 등을 송부하여 주시면 검토 후 의견 및 향후 필요 절차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부정경쟁 방지법 체크리스트

2.1.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분야 자율점검

2.1.1. 영업비밀 침해 행위

구분	점검 항목
취득	• 부정한 방법으로 타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적이 있는가?
	• 경쟁사 영업비밀을 취득할 목적으로 경쟁사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공개	• 컨소시엄으로 알게된 타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와 공유한 적이 있는가?
	• 협력사 기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적이 있는가?
	• 제품의 전략화 계획 등 영업비밀을 협력사에 제공한 적이 있는가?
사용	• 업무상 확보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학술목적으로 사용, 공개한 적이 있는가?
	• 제 3자의 영업비밀 사용시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적이 있는가?
	• 경력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개발했던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는가?

2.1.2. 영업비밀의 보호

구분	점검 항목
비밀유지의무	• 영업상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위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퇴직자 등	• 퇴사자 또는 전배자 발생시 관련 영업비밀 인수인계 등 정해진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 제대로 퇴사/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부정경쟁 방지법 체크리스트

2.1.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분야 자율점검

2.1.3.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가이드 라인(지식재산 위원회)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 체크리스트

※ 다음의 체크사항 중 하나라도 'YES'에 해당하는 기술은 유출시 처벌 가능성이 있음

연번	체크사항
1	• 재직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료에 대하여 “대외비” 또는 “Confidential” 이라는 표기, 암호 설정,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등 해당 자료를 취급하는 사람이 영업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	• 재직 중,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재택근무 등의 목적으로 회사 밖으로 반출(메일, 이동식저장장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3	• 재직 중,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얻고, 경우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4	• 재직 중, 거래처 등 타사의 영업비밀을 업무상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 하고 있습니까?

※ 다음의 체크사항 중 하나라도 'NO'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유출로 판단될 수 있음.

연번	체크사항
1	• 퇴직 시,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2	• 퇴직 시,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Google Drive 등)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3	• 퇴직 시, 개인 메일(Gmail, 네이버메일 등)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4	• 퇴직 시, 개인 PC·노트북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5	• 퇴직 시,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6	• 퇴직 시, 집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특히 출력문서)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I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1. 부정경쟁 방지법 및 시행령



3. 부정경쟁 방지법 및 시행령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법률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d of document

- 발행부서: 한화시스템(주) 컴플라이언스팀
- 개정판 발행연월: '25.12.

※ 본 자율준수 편람의 무단 복제·배포·수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 본 자율준수 편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담당자 (jangsw@hanwha.com/02-729-4929)앞으로 문의 바랍니다.